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1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12월 17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의 제목을 조문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조의 제목을 “조직·인력 운용”에서 “기관장의 책무”로 수정함
(안 제3조).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제목을 “(조직·인력 운용)”에서 “(기관장의 책무)”로 한다.

<수정안 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조직·인력 운용)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 align="right"><신 설></p>	<p>제3조(<u>조직·인력 운용</u>) ①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</u></p>	<p>제3조(<u>기관장의 책무</u>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기관장의 책무) ① 출자·출연 기관이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조직·인력 운용)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<u>기관장의 책무</u>) ①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</u></p>